상 품 요 약 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 품 요 약 서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기본보험료에 의한 기납입보험료”등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부분에 관련된 용어들은 해당 용어 앞에 [기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예시) [기본]계약자적립액, [기본]기납입보험료 등

또한 보장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기납입보험료” 등 보장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부분에 관련된 용어들은 해당 용어 앞에 [추가]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예시) [추가]계약자적립액, [추가]기납입보험료 등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장해

약관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2. 재해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3.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본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단,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기본보험금액으로 합니다.) 단, 기본보험금액은 중도인출이 있을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3. 보험월계약해당일
 계약일로부터 한 달씩 지난 시점의 매월 계약해당일(이하 "월계약해당일"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기본보험료

(보장형 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성별, 나이,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이며, 기본보험료의 납입은 최소 10만원과 약관 제50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 제4항 제6호에서 정의된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해당액의 0.5% 중 큰 금액 이상 최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 이하의 범위에서 만원 단위로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 가능 시기 및 한도 등은 보장형 계약과 적립형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형 계약)

(1)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기간 종료일 - 1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라 “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됩니다.

- 정기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만원입니다.
- 수시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만원입니다.

(3)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3) 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 × 12) 의 10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6) (5)에 따라 추가로 납입된 보험료는 (3)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장형 계약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요약)

구분	납입한도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x 납입기간(연) x 12) x 100%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x 기본보험료 납입횟수)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적립형 계약)
(1) 적립형 계약에서 추가납입보험료는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라 “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됩니다.
- 정기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 수시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일로부터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에도 불구하고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계약의 경우 전환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 × 12)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환 후 경과년수는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구분	납입한도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납입기간(연) × 12) × 200%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경과월수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계약의 경우 전환 후 경과년수별로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

3. 위험보험료

주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4. 기납입보험료

(보장형 계약)

4-1. [기본]기납입보험료

(1)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2) 계약자가 약관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의해 중도인출하여 [기본]계약자적립액이 변경된 경우 [기본]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합니다.

$$\text{인출 후 [기본] 기납입보험료} = \text{인출 전 [기본] 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3)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기본)기납입보험료는 약관 제3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4)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는 경우의 (기본)기납입보험료는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 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 (기본)기납입보험료에 해당 중도인출 또는 감액 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약관 제4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단,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4-2. (추가)기납입보험료

(1) 계약자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2) 계약자가 약관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의해 중도인출하여 [추가]계약자적립액이 변경된 경우 (추가)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합니다.

$$\text{인출 후 (추가) 기납입보험료} = \text{인출 전 (추가) 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후 (추가)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추가)계약자적립액}}$$

(3)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의 (추가)기납입보험료는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 후 (추가)기납입보험료에 해당 중도인출 후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적립형 계약)

(1)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약관 제51조(적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3항의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계약자가 약관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의해 중도인출한 경우 기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인출 후 (기본) 기납입보험료} = \text{인출 전 (기본) 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text{인출 후 (추가) 기납입보험료} = \text{인출 전 (추가) 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후 (추가)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추가)계약자적립액}}$$

(3)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기납입보험료는 약관 제3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4) 약관 제3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 의해 해당월의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기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5)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는 경우의 기납입보험료는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의 감액 후 기납입보험료에 해당 중도인출 또는 감액 후에 납입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⑥ 계약자적립액 운용 관련 용어

1.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설 명】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3. 특별계정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상이하여 적립액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산과 구별하여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설 명】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4. 펀드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약관 제48조(보험계약대출)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상당하는 계약자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액" 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 이라 함은 계약자적립액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설 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 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월공제액

보장형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상관없이 계약의 체결 및 유지, 위험보장을 위하여 매월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다만,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월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7. 월대체공제액

적립형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상관없이 계약의 체결 및 유지, 위험보장을 위하여 매월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비례 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 제외) 및 선택한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8.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경우 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적립형 계약)

(1) 기본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경우 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서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비례 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9.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10.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1.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2.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3.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 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⑦ 보장형 계약의 보증 관련 용어
1.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기본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액과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2.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기본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⑦의2 적립형 계약의 보증 관련 용어
1.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제3호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을 말합니다.
2.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3.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가)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본)기납입보험료 해당액 및 (추가)기납입보험료 해당액과 적립형 전환 후 납입하는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본)기납입보험료 해당액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추가)기납입보험료 해당액 + 적립형 전환 후 납입하는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 적립형 전환 후 납입하는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나) 계약자가 약관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의해 중도인출한 경우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인출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text{인출 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times \frac{\text{인출 후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다) 계약자가 약관 제3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해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감액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text{감액 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라) 약관 제3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 의해 해당월의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마) 기본보험료의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의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감액 후 또는 중도인출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인출 후에 납입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아래 내용은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의 보장형 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약관 및 기초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순수보장형 정기보험입니다.

* 기본보험기간의 기본보험금액은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본보험기간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액, 계약자적립액의 105%, 기납입보험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플러스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기간 만료 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단,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플러스보험기간의 경우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자적립액(단,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이 “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기본보험기간 동안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액과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보장해 드립니다.

④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수익이 계약자에게 환원되는 상품의 특성상 자산운용에 따른 손실가능성에 대한 책임 또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⑤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기간 종료

일 -1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라 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정기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만원입니다.
- 수시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만원입니다.

1.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 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 × 12) 의 10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제3호에 따라 추가로 납입된 보험료는 제1호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요약)

구분	납입한도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x 납입기간(연) x 12) x 100%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x 기본보험료 납입횟수)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⑥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50%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 4회,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1회에 한하여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중도 인출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인출 후 [기본]해약환급금(다만,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총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⑦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Q) 이 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나요?

A) 이 상품 가입 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종목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집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Q)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에 부가되는 무해약환급금형 특약이 무엇인가요?

A)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에 부가되는 무해약환급금형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까지는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 기간 완료 이후는 유해약환급금형 특약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유해약환급금형 특약보다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전 보험기간동안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유해약환급금형 특약 대비 이 특약의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과기간	유해약환급금형 특약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
계약일 이후 ~ 「납입기간」 이전	0%
「납입기간」 경과 이후	50%

Q.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 유무에 따른 [특약유형]은 무엇인가요?

A. 이 상품에 부가되는 특약 중 일부 특약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A형 특약: 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특약을 말하며 특약명칭 맨 뒤에 (A)가 표기됩니다.
- B형 특약: 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특약을 말하며 특약명칭 맨 뒤에 (B)가 표기됩니다.
- “A형 특약”은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는 동일한 보장의 “B형 특약”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 아래 내용은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의 보장형 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약관 및 기초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 개인형

○ 보험종목의 명칭

유형	구분	종류 및 명칭
일반 가입형	보장형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 보장형 계약
	적립형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 적립형 계약
간편 가입형	보장형	무배당 간편가입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 보장형 계약
	적립형	무배당 간편가입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 적립형 계약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장형 계약)

가. 기본보험기간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일반가입형	60	세	60	세	만15	40	만15	40
일반가입형	70	세	70	세	만15	50	만15	50
일반가입형	80	세	80	세	만15	60	만15	60
일반가입형	90	세	90	세	만15	70	만15	70
간편가입형	60	세	60	세	30	40	30	40
간편가입형	70	세	70	세	30	50	30	50
간편가입형	80	세	80	세	30	60	30	60
간편가입형	90	세	90	세	30	75	30	75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나. 플러스보험기간

기본보험기간	플러스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60세	6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15년	일시납	일시납
70세	7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15년	일시납	일시납
80세	8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15년	일시납	일시납
90세	9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15년	일시납	일시납

※ 플러스보험기간의 경우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자적립액(단,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이 “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적립형 계약)

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남자	여자	
일반가입형	종신	전기납	만15세~80세(전환시점의 나이)		월납
간편가입형	종신	전기납	30세~80세(전환시점의 나이)		월납

○ 보험가입금액 가입한도

일반가입형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 50억원

간편가입형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 20억원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가입한도는 보험종류,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피보험자의 나이 및 피보험자의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계약 및 특약별 가입한도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건강진단

이 상품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 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펀드유형 : 채권형, 가치주식형 2호, 성장주식형 2호, 아시아주식형 2호, 글로벌주식형 2호, 인덱스주식형 2호, 브릭스주식형, 유럽주식형, 글로벌채권형, 골드투자형, 미국주식형 3호, 글로벌고배당주식형, 글로벌멀티인컴, 글로벌하이일드채권형, MMF형, 배당주식형 2호, 안정 포트폴리오형, 중립 포트폴리오형, 적극 포트폴리오형, 달러단기채권형, 미국채권형, 글로벌 IT 섹터,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글로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섹터, 중국주식형, 글로벌 ESG 주식형, 글로벌AI자산배분, 은퇴맞춤 TDF2035, 은퇴맞춤 TDF2045, 은퇴맞춤 TDF2055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판매중인 펀드 중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14개까지 펀드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일반가입형]
+ 무배당 암진단특약 (선택특약)
+ 무배당 유방암및남녀생식기암진단특약 (선택특약)
+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선택특약)
+ 무배당 뇌혈관질환진단특약 (선택특약)
+ 무배당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선택특약)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자동부가특약)
+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자동부가특약)
+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 (자동부가특약)
+ 무배당 종신전환특약 (자동부가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자동부가특약)
+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자동부가특약)
+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자동부가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II (자동부가특약)

[간편가입형]
+ 무배당 간편암진단특약 (선택특약)
+ 무배당 간편유방암및남녀생식기암진단특약 (선택특약)
+ 무배당 간편소액암진단특약 (선택특약)
+ 무배당 간편뇌혈관질환진단특약 (선택특약)
+ 무배당 간편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선택특약)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자동부가특약)
+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자동부가특약)
+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간편가입형) (자동부가특약)
+ 무배당 종신전환특약(간편가입형) (자동부가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자동부가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II (자동부가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 주보험
(보장형 계약)
[기본보험기간]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액 × 105% • 기납입보험료

주) 1. 기본보험기간의 “기본보험금액”, “계약자적립액” 및 “기납입보험료”는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제2조의2(용어의 정의2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기간 및 적립형 계약에 한함))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2. 기본보험기간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 별표4(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간편가입형의 경우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월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3. 기본보험기간의 기본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기본보험금액으로 합니다. 중도인출이 있을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본보험기간 동안 회사는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플러스보험기간]
※ 플러스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플러스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

주) 1. “플러스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기간 만료 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단,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립형 계약)

기준 : 계약자가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급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액

주)1. “계약자적립액”은 약관 제2조의2(용어의 정의2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기간 및 적립형 계약에 한함)) 제1항 제2호 제5목 “계약자적립액”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합니다.

2.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약관 제2조의2(용어의 정의2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기간 및 적립형 계약에 한함)) 제1항 제3의2호 제3목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무배당 (간편)암진단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및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제외)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 회에 한함)	1,000 만원 (다만, 1 년 미만 진단 확정시 500 만원)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 이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1) A형 :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B형 :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간편)유방암및남녀생식기암진단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유방암및남녀생식기암 진단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 회에 한함)	1,000 만원 (다만, 1 년 미만 진단 확정시 500 만원)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암”(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및“대장점막내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 이전에 “암”(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및“대장점막내암”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1) A형 :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B형 :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간편)소액암진단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소액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또는“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	1,000 만원 (다만, 1 년미만 진단확정시 500 만원)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암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은 제외 (약관 별표 7(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참조)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부활 (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 이전에 “암”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은 제외(약관 별표 7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참조)) 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약관 제 5 조 (“대장점막내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 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 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1) A형 :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B형 :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간편)뇌혈관질환진단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	1,000 만원 (다만, 1 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500 만원 지급)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1) A형 :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B형 :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간편)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	1,000 만원 (다만, 1 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500 만원 지급)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1) A형 :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B형 :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선지급서비스특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더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선지급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과 5,000만원 초과금액의 50%를 합한 금액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3억원까지로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II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조건부인수특약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피보험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증보험료법, 보험금감액법, 연령가산법(연령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같이 사용가능)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특정 신체부위보장제한부 인수형(1종) 또는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형(2종)을 부가하여 면책기간을 설정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보험 당사자 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제한
다음의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시 지급제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타인의 사망보장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관련 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 적용이율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이 보험의 주계약의 사망 보장부분에 사용되는 적용이율은 연복리 1.00%이며, 동 이율은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기본보험기간의 적립부분은 특별계정 운용실적(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됩니다.

2.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일반가입형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5	0.00018
40세	0.00057	0.00041
60세	0.00315	0.00163

구분	간편가입형 사망률	
	남자	여자
40세	0.000682	0.000565
60세	0.004683	0.002620
80세	0.035944	0.021081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은 무배당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 무해약환급금형 특약 부가시 무해약환급금형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 : 무해약환급금형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까지는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 기간 완료 이후는 유해약환급금형 특약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유해약환급금형 특약 대비 이 특약의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과기간	유해약환급금형 특약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
계약일 이후 ~ 「납입기간」 이전	0%
「납입기간」 경과 이후	50%

다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전 보험기간동안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출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011%

2. 해약환급금 예시

□ 일반가입형

(기준 : 주보험 가입금액 1억원, 90세 만기, 전기납, 월납, 40세 남자, 채권형 100%, 단위-만원, 만원미만 절사)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투자수익률 -1.00% 가정		투자수익률 2.50% 가정		투자수익률 3.75% 가정	
		해약 환급금	환급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3개월	34	0	0.00%	0	0.00%	0	0.00%
6개월	68	0	0.00%	0	0.00%	0	0.00%
9개월	102	0	0.00%	0	0.00%	0	0.00%
1년	136	0	0.00%	0	0.00%	0	0.00%
2년	272	0	0.00%	0	0.00%	0	0.00%
3년	408	113	27.70%	128	31.37%	134	32.84%
4년	545	246	45.14%	274	50.28%	284	52.11%
5년	681	378	55.51%	421	61.82%	437	64.17%
10년	1,363	887	65.08%	1,061	77.84%	1,133	83.13%
15년	2,044	1,267	61.99%	1,667	81.56%	1,844	90.22%
20년	2,726	1,594	58.47%	2,319	85.07%	2,668	97.87%
30년	4,089	1,996	48.81%	3,715	90.85%	4,693	114.77%
40년	5,452	1,469	26.94%	4,869	89.31%	7,222	132.47%

□ 간편가입형

(기준 : 주보험 가입금액 1억원, 90세 만기, 전기납, 월납, 40세 남자, 채권형 100%, 단위-만원, 만원미만 절사)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투자수익률 -1.00% 가정		투자수익률 2.50% 가정		투자수익률 3.75% 가정	
		해약 환급금	환급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	0	0.00%	0	0.00%	0	0.00%
6개월	81	0	0.00%	0	0.00%	0	0.00%
9개월	121	0	0.00%	0	0.00%	0	0.00%
1년	162	0	0.00%	0	0.00%	0	0.00%
2년	325	0	0.00%	0	0.00%	2	0.62%
3년	487	146	29.98%	165	33.88%	172	35.32%
4년	650	300	46.15%	333	51.23%	345	53.08%
5년	813	452	55.60%	503	61.87%	522	64.21%
10년	1,626	1,043	64.15%	1,249	76.81%	1,333	81.98%
15년	2,439	1,487	60.97%	1,958	80.28%	2,167	88.85%
20년	3,252	1,852	56.95%	2,708	83.27%	3,120	95.94%
30년	4,878	2,234	45.80%	4,273	87.60%	5,440	111.52%
40년	6,504	1,565	24.06%	5,701	87.65%	8,599	132.21%

①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 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 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 적립액에서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②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③ 상기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특별계정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④ 해약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⑤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⑥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⑦ 상기예시금액의 투자수익률은 -1%,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50% 및 동 이율의 1.5배인 3.7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⑧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보험가격지수에 관한 사항

Q :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A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주1)]과 평균사업비총액[주2)]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주1)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주2)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40세/월납, 단위:만원]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남	여	
무배당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60세	전기납	117.9%	153.5%	10,000
무배당 간편가입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	60세	전기납	147.3%	206.5%	10,000

* 무배당 간편가입 메트라이프 변액리치정기보험의 경우 비표준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심사보험으로 표준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대비 보험가격지수가 높습니다.